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Broadband Connectivity

번역본



OECD Legal Instruments



브로드밴드 연결성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Broadband Connectivity)

본 문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출판되었습니다. 본문은 OECD 법률 문서의 사본이며 추가 자료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자료에서 표명된 의견과 채택된 논의는 반드시 OECD 회원국의 공식 견해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본 문서와 문서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와 지도는 어떠한 영토에 대한 지위나 주권, 국경이나 경계의 분계 그리고 영토, 도시 또는 지역명에 대한 편향된 관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경되지 않는 한 무료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유료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동 번역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OECD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OECD의 공식 버전은 영어와 프랑스어이며 OECD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legalinstruments.oecd.org "

■ 배경 설명

브로드밴드 개발에 관한 권고안은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CDEP: 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의 제안에 따라 OECD 이사회에서 2004년 2월 12일 처음 채택되었다. 권고안은 2021년 2월 24일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브로드밴드 연결성에 관한 권고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본 권고안은 OECD 내외의 정책 입안자 및 규제 당국에게 브로드밴드 연결과 관련된 참고 사항을 제공한다. 권장 사항의 목표를 로드맵으로 삼아, 각 국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시민과 기업을 위한 연결성에 대하여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o OECD의 연결성에 대한 연구

CDEP을 통하여 OECD는 수년간 인터넷 및 ICT를 활용한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증거 기반 정책(정책학을 포함한 여러 공공정책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엄격하게 검증된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결정하려는 시도)을 개발하여 왔다. 디지털 전환에서 연결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OECD는 1988년 CDEP의 통신 인프라와 서비스 정책에 관한 워킹그룹(WPCISP: Working Party 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and Services Policy)을 신설하였다. WPCISP는 통신 회사들의 민영화 이후 통신 정책과 관련해 마련된 최초의 조직이었다.

2004년 OECD가 2004년에 권고안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iPhone도 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2004년 이후로 OECD는 인터넷 정책 수립에 앞장서 왔으며, 디지털 전환의 전제조건으로서 광범위하고 저렴한 브로드밴드의 중요성을 예견하였다. 2004 권고안은 브로드밴드 시장의 확대를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공급 협정을 촉진하며,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효과적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에 대한 시행을 공급자들에게 요구하였다.

하지만, 2004년 이후 브로드밴드 통신망을 구축을 촉진하고, 사용을 장려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국가별로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통신 시장에서는 저렴하며, 적시에 통신 커버리지를 보장하고, 또한 비영리 사업자를 포함한 소외계층의 배제를 피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공공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망이 연결되는 것만으로는 고급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연결시 품질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로드밴드 연결에 대한 권고안은 통신 시장의 동향에 대응하고 기술 및 정책 입안 및 규제의 최신 발전을 고려하여 2004년 버전의 권고안을 대폭 개정하게 되었다.

o 권고안 개정에 대한 포괄적인 절차(2019년~2021년)

개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프로세스 (Multi-stakeholder Process: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WPCISP의지식과 경험에 도움을 받았다. 개정안은 2016년 CDEP 표준 설정 이행 계획에 따라수행되었으며, 브로드밴드 정책 및 기술 개발(향후) 및 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정의신흥 동향(향후)에 대한 보고서에서 지원받았다. 2019년 초에 CDEP와 WPCISP 대표에게 발송된 구현 설문지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었다.

비공식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 그룹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사무국이 개정된 권고안을 개발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었다. WPCISP와 CDEP에서의 논의를 넘어, 경쟁 위원회와 규제 정책 위원회를 포함한 OECD 관련 분야의 다른 위원회와의 협의는 관련 분야 정책 입안자들의 관점도 고려할 수 있었다.

o 권고안의 범위

개정된 권고안은 권고안의 2004년 버전을 기반으로 하며, 채택 이후 기술과 정책 결정의 광범위한 발전을 반영하였다. 이는 철저한 다중 이해 관계자 프로세스에서 제안된 총체적인 조항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결의 중요성, 모두에게 균등한기회의 촉진, 유비쿼터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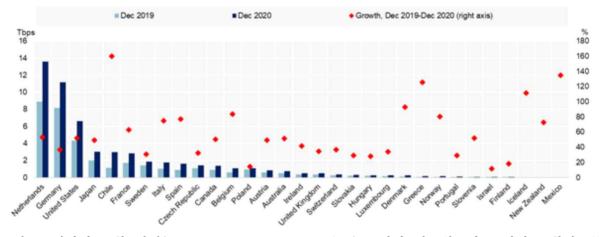
개정된 권고안은 다음의 5가지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 브로드밴드 개발의 경쟁, 투자 및 혁신을 촉진한다.
-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브로드밴드 구축 장벽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 탄력성, 신뢰성, 보안 및 대용량 네트워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 통신 네트워크의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
- 브로드밴드 시장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o COVID-19 대응 및 복구 관련

COVID-19 위기는 연결과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뚜렷하게 부각시켰다. 세계적인 유행병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시민, 기업 및 조직의 연결성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촉진해야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COVID-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동 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13억 OECD 회원국의 시민들 중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있으며, 중요한 국제 정책 조정은 현재 G7이나 G20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행되고 있다. 전체 인터넷 밸류 체인에서 고정/이동 브로드밴드 사업자, 콘텐츠 및 클라우드 제공자, 인터넷 교환점(IXP) 등이 발병 전과비교하여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o 국가별 인터넷 교화 지점의 인터넷 대역폭



- 참고: 인터넷 교환 지점(IXP: Internet Exchange Points)는 여러 네트워크가 트래픽 교환하도록 연결되어 있는 트래픽 교환 교차로를 의미한다.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경우 2020년 12월 현재 데이터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조만간에 업데이트 예정

- 출처: OECD based on Packet Clearing House(2021)

브로드밴드 연결에 대한 권고안은 시민들과 기관들이 잘 연결되고 적절한 수준의 인터넷 접속이 부족한 영역에 대한 연결성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총체적인 일련의 정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위기 상황에서의 인터넷 운용 및 유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oecd.org/sti/broadband/

연락처: cisp@oecd.org

■ 이행

2004년 권고안의 이행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는 2008년에 이사회에 전달되었다. 이사회에서는 권고안의 원칙이 브로드밴드 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여기에 포함된 정책 지침이 브로드밴드 개발을 진전시키는데 있어 정책 입안자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결론을 지었다. 개정된 권고안의 이행, 보급 및 지속적 관련성에 대한 이행 상태를 중점적으로 다룰 다음 보고서는 2026년에 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개정 권고안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WPCISP를 통해 CDEP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 연결에 대한 정보 교환, 정책과 규제의 모범 사례 발굴, 보다 효과적인 브로드밴드 구축 및 채택을 위한 복수 이해관계자 및 학계간 대화 증진을 위한 포럼을 운영한다.
-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 통신 네트워크의 단기/중 장기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환경 영향을 분석하고,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한다.
- 구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 OECD 기준 브로드밴드 속도 및 기타 품질 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혁신과 발전에 반영한다.
- 사회 취약층에 대한 연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한다.

o 이사회는,

1960년 12월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 제5조 b)를 고려하여,

규제산업 내 구조적 분리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310], 공공 부문 정보의 접근 개선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362],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선언문(서울 선언문)[OECD/LEGAL/0366], 녹색 성장 선언문[OECD/LEGAL/0374], ICT 및 환경에 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3080], 인터넷 정책 수립 원칙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387], 국제 모바일 로밍서비스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388],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에 관한이사회 권고안[OECD/LEGAL/0390], 소비자 정책결정 수립에 관한이사회 권고안[OECD/LEGAL/0390], 소비자 정책결정 수립에 관한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03], 경제사회적 번영을 위한 디지털 보안위험 관리에 관한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15],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22], 디지털경제 선언문: 혁신, 성장, 사회 번영(칸쿤 선언문)[OECD/LEGAL/0426], 인공지능에 관한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49], 핵심활동의 디지털 보안에 관한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49], 핵심활동의 디지털 보안에 관한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49], 핵심활동의 디지털 보안에 관한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56]을 고려하여,

디지털 변혁을 위한 연결성과 모두를 위한 공평한 기회 증진의 중요성, 그리고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브로드밴드 인프라 및 서비스의 구축 및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경제 행위자간 효과적인 경쟁 촉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규제당국이 연결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경쟁, 투자 증가, 안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연결성을 제공하는 민간 부문의 주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에 대한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위급 상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연결성, 디지털 포용, 네트워크 용량 및 회복력 등의 중요성 인식하고.

이러한 야심찬 목표들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함께, 적절한 시기에 달성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I. OECD 회원국들과 동 권고안을 준수하는 국가(이하 "회원국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브로드밴드 개발에 대한 경쟁, 투자, 혁신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1.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연결성에 대한 최종 이용 자의 선택권을 확장하고 보장하기 위한 비차별적 정책을 통해 고용량 네트워크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 2. 특정한 국내 환경 및 시장구조 하에서 경쟁을 촉진 할 수 있는 자발적 네트워크 공유, 공동 투자 또는 오픈액세스 등을 포함한 정책에 대한 고려
 - 3. 회복력 있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 투자, 네트워크 커버리지 및 고용량 네트워크 확대를 촉진하는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가용성 촉진
 - 4. 경쟁 중인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비차별적인 정책 및 규제 개발
 - 5. 연결성 및 그 활용과 적용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혁신 지원
 - 6.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특히 구세대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 할 때, 소비자, 통신사업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규제당국을 포함하는 다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
 - 7.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이고(증거 및 지식에 기반한), 적절하며, 일관된 방식으로 의사 결정된 연결성에 대해 견고한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이행하며, 지속적 인 적절성과 적합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프레임워크를 정기적으로 검토
- Ⅱ. 회원국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브로드밴드 구축 장벽을 완화**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1. 모두를 위한 접근성을 촉진하고, 지역, 성별, 능력, 사회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두가 합리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발전된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채택 및 효과적인 활용 증진. 이는 저소득 및 기타 서비스 미이용 가구를 위한 촉진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 2. 경쟁을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예를 들어 농촌 및 벽지의 수요 집계 촉진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원활하지 않은 소외 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적절히 해결 되지 않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

- 3.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선택권을 확대시키며,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계약 조건의 공정성,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가능성, 엄격한 규제 감시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소비자와 통신 서비스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소비자 권한을 보장
- 4. 경쟁과 투자 유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프라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자 다음과 같은 규제 및 정책을 통해 브로드밴드 구축 장벽을 해소.
 - a. 면허 절차 간소화, 관로권과 공공 인프라에 대한 간결화된 접근성 및 네트워크 구축 허용
 - b. 수동적 인프라에 대한 접근 활성화
 - c. 통신망 사업자가 비용, 네트워크 중단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목 건설과 관련된 망 고도화 활동에 협력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 5.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주파수 관리 지원 조치 시행. 이는 모범적인 주파수 경쟁적 할당 절차, 주파수 공유 및 기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
- 6. 모든 소득, 연령, 성별, 능력의 시민들이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 개선 촉진 및 투자 시행. 이는 사용량 및 수요 증가를 위해 지역적으로 유의미하고 사용이 용이한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Ⅲ. 회원국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복력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고품질 네트워** 크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1. 최종 이용자 선택권을 알리고 네트워크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통신 두절에 대한 것을 포함한 주기적인 보고를 통하여, 공개적이고, 증명가능하며, 세분화 되고, 신뢰할 만한 보급률, 커버리지 및 가능한 경우 서비스 품질(QoS) 정보 등을 공개
 - 2. 네트워크 중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다양성 및 대체 설비와 같은 통신 네트워크의 회복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촉진하고, 그러한 조치의 효율성을 평가
 - 3. 통신 네트워크를 보장하고 디지털 보안 위험에 대한 네트워크 회복력을 갖추도록,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
- IV. 회원국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신 네트워크의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1.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네트워크와 기기 장려 및 지원

- 2. 통신망 사업자가 환경 영향 및 환경 영향 개선을 위해 수립한 이니셔티브를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연결성의 긍정적인 환경 효과에 대해 보고하도록 장려
- V. 회원국들이 정부 정책의 이니셔티브가 적절한지 여부 및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연결성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의 가용성, 성과, 채택에 대한 데이 터의 수집, 분석, 공개를 통하여 연결성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
- VI. 사무총장이 동 권고안을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 VII. 회원국들이 관련 정부 부처 및 규제 당국 차원에서 동 권고안을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 VIII. 비회원국들도 동 권고안을 고려하고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 IX. 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작업반을 통해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가 다음을 따르도록 지시한다.
- a. 연결성에 대한 정보 공유, 정책 및 규제의 모범 사례 발굴, 더욱 효과적인 브로드밴드 구축 및 채택을 위한 다수 이해관계자 및 학제간 대화 촉진을 위한 포럼의 역할을 담당하고, 브로드밴드 분석법, 정책 및 이행 사례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활성화.
- b. 통신 네트워크의 단기, 중기, 장기적인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환경 영향 및 동 권고안 이행에 관한 지표 개발 및 데이터 수집
- c. 국가별로 다른 네트워크 발전 수준을 고려한, 권고안 이행에 관한 실질적 지침 제공
- d.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혁신 및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OECD 브로드밴드 속도 기준 및 기타 품질 특성 검토
- e.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국의 성과 및 최소수혜 계층이 연결성을 통해 얻은 혜택을 점검
- f. 동 권고안이 채택된 후 적어도 5년, 그리고 그 이후 적어도 10 년마다 동 권고안의 이행, 배포, 지속적 관련성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

■ OECD에 대하여

OECD는 세계화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협력하는 특별 포럼이다. OECD는 또한 기업지배구조, 정보경제, 인구 노령화 등의 도전적 과제에 대하여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기구는 각 정부가 기존의 정책에 대하여 비교하고,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국내외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OECD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영국 및 미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연합은 OECD 업무에 참여한다.

■ OECD 법률 도구

1961년 OECD가 창설된 이후, 약 480개의 실질적인 법률 도구가 OECD 구조 안에서 마련되었다. 여기에는 OECD 법(즉, OECD 협약에 따라 OECD 이사회가 채택한 결정 및 권고안) 과 OECD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개발된 다른 법적 제도(예: 선언, 국제 협약)가 포함된다.

시행중이거나 폐지된 모든 실질적인 OECD 법률적 도구는 온라인 OECD 법률적 도구 부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다음 5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결정: 채택 당시 기권한 것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OECD의 법적 도구이다. 이는 국제 조약은 아니지만, 같은 종류의 법적 의무를 수반한다. 채택자는 의사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구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고안: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천력이 있는 OECD 법률 도구로, 이 도구는 채택자들의 정치적 의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채택자는 권고안을 완전히 이행하기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회원국은 대개 권고안이 채택될 때 기권한다. 단, 법적 조건에서는 이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선언: OECD의 하부 기관 등 조직내에서 준비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OECD 법률

도구이다. 보통 일반적인 원칙이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엄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나 기구의 각료회의에서 채택된다.

국제협정: OECD 법률 도구는 기구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협상되고 마무리된다. 참여 자들에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협약, 양해 및 기타: 수출신용협약, 해상운송 원칙 국제 양해 및 개발원조위원회 (DAC) 권고와 같은 몇 가지 임시적, 실질적인 법률 도구가 OECD에서 개발되었다.